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 전자민원

전자민원창구는 정부 전자민원 통합에 따라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운영 www.epeople.go.kr)에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 서면민원

우편	주소 및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를 기재하여 아래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곳: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TEL : (주) 02-2110-6727 (야) 02-2110-6791 • 민원처리기한
팩스	주소 및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를 기재하여 아래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FAX : (주) 02-2110-0682 (야) 02-2110-0688

질의	법령관련 : 14일	건의	14일
	단순질의 : 7일		
기타	즉시(3근무시간 이내)	고충	7일

◎ 방문예약상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 방문예약신청안내 〉 방문상담예약 신청 〉 신청서 작성

예약신청시 유의사항

· 예약취소는 방문 1일 전까지 가능
· 방문희망일은 1일 후부터 한달까지 가능
· 평일(토 · 일요일, 공휴일 제외) 예약가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대응 및 점검을 실시합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2.1.27 시행)은 건설현장 사업주, 공중이용시설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예산 · 인력 확보 여부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의무와 처벌을 규정합니다.
- 사업장(건설현장) 경영책임자는 종사자의 안전,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으며, 공중이용시설(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이용자 안전 확보 조치의무가 있습니다.
- 경영책임자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 · 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 중대재해법 업무

- 국토부가 직접 운영, 관리하는 건설현장 또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투입인력 · 예산 확인
- 유해 또는 위험요인 발견 시 신고절차, 관계기관 보고 및 추가 피해방지조치 등 대응체계 마련
- 국토부가 직접 운영 · 관리하지 않는 수도권 소재 건설현장,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수립 가이드라인 지원
- 지자체와 합동 안전 캠페인 시행, 지자체 · 민간 발주자 · 관리주 대상 안전법령 설명회 실시

청렴韓세상

서울지방국토청은 항상 변함없이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가까이, 청탁은 멀리

한눈에 보는

「청탁금지법」

변화와 함께하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목적 및 적용대상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근절을 통한 공정한 직무수행,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확보

공공기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학교법인, 언론사등

공직자등

국가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 ·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

공무수행사인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또는 기업

▶ 공무수행사인의 유형(4개)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 · 위탁받은 자
-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 심의 ·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

부정청탁금지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 제재내용

제재대상	제재의 종류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한 사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한 사람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한 공직자등)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예외사유

- 법령 · 기준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행위
-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 전달
- 법정기한 내 처리를 요구하거나 진행상황을 문의
-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 증명 등을 신청 · 요구
- 질의 · 상담을 통한 법령, 제도 등의 설명 등
-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국민은 가까이, 청탁은 멀리

금품 등 수수금지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을 수 없으며, 직무 관련이 없더라도 1회 100만원(회계연도300만원)을 넘는 금품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제재내용

제재대상	제재의 종류
1회 1백만원(매 회계연도 3백만원)을 넘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백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한 사람	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 예외사유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 또는 상급 공직자가 격려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원화한 직무수행, 사교, 부조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안**의 음식물 · 경조사비 · 선물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화환, 조화는 10만원)**
-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공작자 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 상조회 · 동호회 · 동창회 · 친목회 · 종교 및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금품 등
- 직무 관련 공식적 회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 숙박 · 음식물 등
-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홍보물품 등이나 추첨 등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그 밖 다른 법령 · 기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추석맞이 「청탁금지법」 이것만 알자

이웃한테 추석선물이나 식사대접을 할건데 청탁금지법 위배일까요?

아닙니다.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민간기업이 소속 임직원, 고객 또는 협력업체 직원 등에게 제공하는 선물, 식사도 상한액 내에서만 가능하나요?

아닙니다.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선물이나 식사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석명절 공공기관 내 직장 동료 사이에 주고 받는 선물이나 식사는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상한액을 넘어서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격려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민원인, 인사 · 취업 · 단속 · 감사 및 입찰참가자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명절 선물로 상한액 제한 없이 선물 등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이나 식사는 일체 허용하지 않습니다.

장인, 며느리, 처형 등 친족이 공직자인 경우에 친족사이라도 상한액을 넘는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공직자가 친족관계(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인 경우 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명절 선물과 식사를 동시에 제공 받을 때는 상한액이 어떻게 되나요?

선물과 식사 중 상한액이 큰 5만원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식사와 선물의 각각의 상한액은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